

특수대학원 영유아교육학과 내규

- 제 정: 2002년 4월 2일
- 개 정: 2023년 12월 12일
- 관리부서: 영유아교육학과 사무실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제1조에 따라 영유아교육학과 학사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1 장 운 영

제2조(신입생 오리엔테이션)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사 안내 및 원격강의 운영 방법에 대한 기초교육을 진행합니다.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 하며, 참석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동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수강하여야 합니다.

제3조(수업운영) ① 모든 교과목의 온라인·오프라인 수업 비율은 7:3으로 진행됩니다. 예를 들어, 15주 강의 시 3회 이상의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됩니다. 다만, 교과목 특성에 따라 온·오프라인 수업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② 오프라인 수업의 학습 참여자가 2명 이하일 경우에는 지정된 오프라인 수업은 취소되며, 담당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지정된 오프라인 수업일이 아닌 별도의 일정에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제4조(수업내용) 모든 교과목 수업은 이론과 실제 중심 내용으로 구성됩니다. 다만, 담당교수님의 강의운영 계획에 따라 이론과 실제중심의 강의 비율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제5조(학사일정 확인) 학사일정은 본교 특수대학원 및 학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,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집니다.

제6조(교과목 수강 등) ① 학기내 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에는 「영유아교육연구의 이해」 온라인 강의가 각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에 제공됩니다.

② 「영유아교육연구의 이해」 강의내용은 영유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, 레포트 작성 방법, APA 양식, 도서관 이용 안내, 과제 및 학위논문 자료검색 등입니다.

③ 모든 교과목에서의 레포트 과제는 APA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레포트 과제의 APA 양식은 과제 평가에 반영됩니다.

④ 레포트 과제의 피드백은 레포트 과제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소집단이나 전체적으로 피드백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.

⑤ 교·보육 실제 발표에 대한 피드백은 가능한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지며, 다만,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온라인수업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제7조(자격증 등)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

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**보육교사 1급으로 승급**이 가능합니다.

② 현직 교원(공립유치원, 초·중등학교)의 경우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 37조에 의하여 **연구실적 평점 최대 1.5점(직무와 관련 1.5점, 그 외 1점) 취득** 가능합니다.

③ 유치원 정교사(2급) 자격과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은 본 학과에서 **불가능**합니다.

제8조(학과사무실 운영시간) 학과사무실 운영시간은 학과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용합니다.

제9조(도서관이용방법 등) 논문 및 보고서와 관련된 참고문헌 관리, 표절예방, 자료검색 등에 대한 이용방법은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신청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.

제 2 장 시험 및 성적

제10조(시험) ① 시험은 정기고사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되며, 담당 교수님의 강의운영계획(평가계획)에 따라 시험유형 및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② 정기고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담당교수님의 강의운영 계획에 따라 실시될 수 있습니다.

제11조(성적확인) ① 성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, **지정된 성적확인 신청기간에 담당 교수님께 요청**할 수 있습니다.

③ **담당 교수님은 성적 확인 후 정정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** 성적확인 신청기간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.

④ **성적확인 신청기간 이후에는 성적 확인 요청이 불가능**합니다. 다만, 채점오류나 전산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담당 교수님께 별도 제출하여 성적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⑤ 인정된 학점이라도 추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취소됩니다.

제 3 장 석사학위 청구

제12조(석사학위청구) 석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①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

② 학위자격 시험

③ 학위과제 수행

제13조(석사학위 청구논문 구술 종합시험)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구술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.

① **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4학기 때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**입니다.

② 종합시험은 전공분야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수준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합니다.

③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분야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, 양적연구방법, 질적연구방법, 통계분석 등입니다.

④ 학위논문은 종합시험 통과 이후 진행됩니다.

제14조(논문지도 및 논문연구) 석사학위 청구논문에 관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및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합니다.

제15조(학위과제) 학위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및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합니다.

① 학위과제는 학위논문에 준합니다.

② 학위과제 수행 절차는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.

제16조(학위자격시험) 학위자격 시험에 관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및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합니다.

제 4 장 징 계

제17조(부정행위 및 저작권법 위반등) ① 제10조의 시험실시 중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본교 학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.

②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포털사이트 카페, 스터디 그룹 등에서의 기출문제 공유와 같은 행위를 자진 삭제하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제 5 장 보 칙

제18조(준용규정)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및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합니다.

부 칙

(제1조) 본 내규는 2024년 3월1일부터 모든 신입생 및 재학생(복학생 및 재입학생 포함)에 적용하여 시행합니다.